

	정주고등학교 http://www.jb-chongju.hs.kr	<h1>가정통신문</h1>
---	--	----------------

530-5325(교무실)/ 530-5300(행정실)/ <http://www.jb-chongju.hs.kr>/ 정읍시 정주1길 42

가고 싶은 학교! 행복한 교육 공동체!

2024년 학생생활교육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새 학기 학생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각종 학생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에 예방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**학교에서도 지속적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도 학생생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■ 학생생활지도

-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**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**로써, 법령의 근거가 있는 합법적인 지도 행위임
- **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**에 영향을 주는 행위와,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지장을 주어 학교와 **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· 사용**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

■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

-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,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음
 -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·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
 - 학교의 장과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
- 학생의 물품을 조사하고 분리 보관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상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부착 되어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
-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
-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을 제정할 때 금지된 물건과 이후 절차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시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함
-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 물품을 조사할 때에는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음
-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,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■ 학교생활 규정

- 학칙에 관한 특례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규정
(학생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)

[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]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	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(수업 종료 시 까지)	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'가'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 수업시간에 지각*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등 (점심시간 내 20분 내외)	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(20분) 보장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나 ① 3호 '나'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
기타	*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※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			

* 지각: 수업 시작 후 (10)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

■ 학교생활 규정

○ 학칙에 관한 특례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(물품보관)

[제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]

	요건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 등	즉시폐기	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 등			
4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색잡지 등			

2024년 4월 12일

정 주 고 등 학 교 장 (직인생략)